

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제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관련 사항

1. 대주주명		(주) 동부하이텍
2. 신용공여내용	신용공여일	2004년 6월 10일
	신용공여종류	신용대출금
	신용공여금액(원)	65,000,000,000
	신용공여총잔액(원)	65,000,000,000
	만기일	2017년 12월 10일
	신용공여금리(%)	- ~2008.6: 기준금리 + 2.75% - ~2013.6: 기준금리 - 2013.7~: 기준금리 + 9.28% ※ 기준금리: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등급수익률
3. 자금용도		Syndicated Loan 참여를 통한 자금운용수익률 제고
4. 이사회 결의일		2009년 12월 22일

5. 기타

-본 건은 2004년 4월 9일에 기 체결된 계약의 대출계약조건 변경건으로서 아래에 기재된 자구계획 이행약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주단의 일원인 당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의한 것임
 - 당 변경사항은 Syndicated Loan에 참여한 대주단의 동의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사항]

1. 제12조 7항(재무약정) 다호 :
 EBITDA/이자비용 유지

구분	09년 말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변경 전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변경 후	면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2. 제 12조 15항 (자구이행) 다호 :
 대주주 김준기의 계열사 지분 유지

구분	동부화재	동부정밀	동부씨앤아이
변경 전	12.10% 이상	14.00% 이상	12.24% 이상
변경 후	3.62% 이상	14.00% 이상	12.24% 이상

3. 제 12조 15항(자구이행) 마호 추가 :
 동부메탈 미매각 주식 담보취득
 ○수량: 동부하이텍 소유 1,350만주
 (일반공모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담보제공 조건 : 매각, IPO등 자구계획
 추진시 담보 해지